

영등포구의회  
제151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』

# 檢 討 報 告 書

2010. 2. 2.



社 會 建 設 委 員 會

( 專 門 委 員 )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』

# 檢 討 報 告 書

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.

최미경 의원 외 4인 의원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.

## ■ 제안일자 및 제안자

- 제안일자 : 2010. 1. 25
- 제안자 : 최미경 의원(외 4인)

## ■ 개정(제안) 이유

-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보다 많은 다자녀가정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.

## ■ 주요골자

### ● 지원기준(안 제3조)

- “셋째아이 50만원, 넷째아이 이상 70만원”을 “둘째아이 20만원, 셋째아이 50만원, 넷째아이 이상 100만원”을 지원

## ■ 관련법규

-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 제4조 및 제10조
-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21조

## ■ 타 자치단체 조례개정 현황

- 중구 외 23개 자치구

## ■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2008년 2월 1일 제정되어 출산가정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우리구 출산장려금이 타 자치구에 비하여 비교적 낮은 편이므로, 지원을 확대하여 타 자치구와의 형평을 기하고 보다 많은 다자녀가정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,
- 부칙에 출산장려금 지원확대 규정의 개정은 공직선거법과 관련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.
- 참고로 2010년 1월 현재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서울특별시 자치구는 24개구로 둘째의 경우 10만원에서 50만원, 셋째 30만원에서 100만원, 넷째 50만원에서 300만원을 각각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2010. 2. 2.

보 고 자 : 이 남 식

참고자료 : 1. 관련법령  
2. 타 자치구 지원 현황

## 관 련 법 령

### ■ 건강가정기본법 [시행 2008.2.29] [법률 제8852호, 2008.2.29, 타법개정]

#### 제21조 (가정에 대한 지원)

-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.
  1. 가족구성원의 정신적·신체적 건강지원
  2.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
  3. 안정된 주거생활
  4. 태아검진 및 출산·양육의 지원
  5. 직장과 가정의 양립
  6. 음란물·유형가·폭력 등 위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
  7.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
  8. 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의 조성
  9. 그 밖에 건강한 가정의 기능을 강화·지원할 수 있는 관련 사항
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취업여성의 임신·출산·수유와 관련된 모성보호 및 부성보호를 위한 유급휴가시책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, 노인단독가정, 장애인가정, 미혼모가정, 공동생활가정, 자활공동체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. <개정 2007.10.17>
- ⑤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### ■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[시행 2008. 2.29] [법률 제8868호, 2008. 2.29, 일부개정]

#### 제4조 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
- ①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을 수립·시행하고,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·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·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.

#### 제10조 (경제적 부담의 경감)

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·출산·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## 서울특별시 각자치구 출산장려금 지원 현황

(단위:천원)

연번	구 명	출 생 순 위 별					
		첫 째	둘 째	셋 째	넷 째	다섯째이상	여섯째이상
1	종 로 구	-	500	1,000	1,000	1,000	
2	중 구	-	200	1,000	3,000	5,000	7,000~ 30,000
3	용 산 구	50	100	500	1,000	1,000	
4	성 동 구	-	200	500	1,000	1,000	
5	광 진 구	-	100	300	300	300	
6	동대문구	-	300	500	500	500	
7	중 량 구	-	500	1,000	2,000	2,000	
8	성 북 구	-	200	200	200	200	
9	강 북 구	200	300	500	500	500	
10	도 봉 구	200	300	500	1,000	1,000	
11	노 원 구	-	100	300	500	500	
12	은 평 구	-	200	300	500	1,000	
13	서대문구	50	200	200	200	200	
14	마 포 구	-	-	-	-	-	
15	양 천 구	-	100	500	1,000	2,000	
16	강 서 구	-	-	200	300	300	
17	구 로 구	-	200	500	1,500	1,500	
18	금 천 구	-	200	500	1,000	1,000	
19	영등포구	-	-	500	700	700	
20	동 작 구	-	100	500	1,000	1,000	
21	관 약 구	-	100	500	1,000	3,000	
22	서 초 구	100	500	1,000	1,000	5,000	
23	강 남 구	-	1,000	5,000	10,000	20,000	30,000
24	송 파 구	-	300	500	1,000	1,000	
25	강 동 구	-	500	800	1,000	1,000	